

경남도립남해대학 비전임교원 여비 지침

1 관련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46조 1항
- 경남도립남해대학 겸임교원 임용규정 제6조 및 제9조
- 경남도립남해대학 비전임교원 보수 및 수당 지급규정 제7조

2 목 적

- 비전임교원이 대학의 공무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3 적용범위

- 비전임교원은 대학의 초빙교원, 산학협력중점교원, 겸임교원 및 외국인교원으로 한다.
- 비전임교원의 실비보상은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및 「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준용한다.

4 출장임무

- 비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은 공무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에 예산범위 내 실비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 - 재학생·졸업생 취업 지도 및 현장실습처 확보 등 취업 활동
 -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활동
 -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시 활동
 - 각종 업무협약 및 산학협력 활동
 -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활동
 - 타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대학을 홍보하는 활동
 - 총장의 지시에 의하여 이행해야 하는 활동